



제249회 임시회  
2006. 4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 의무화시행등에 관한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□ 제안 이유

-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인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을 의무화 하여 도민에게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

-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은 시지역으로 함(안 제4조)
- 공공기관,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, 청소대행 사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대·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(안 제5조)
- 시장·군수는 매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, 보급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천연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·폐차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
-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된 “협의회” 를 두도록 함(안 제8조)

## □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공해 자동차인 천연가스 자동차의 구입을 의무화 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질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사료됨.
  - 안 제5조에서 규정한 ‘자동차를 대·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시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’ 라고 의무화 하고 있어,
  - 현재 45인승 버스를 구입할 경우 천연가스 버스는 대당 약 8천 2백만원 으로 경유버스 6천만보다 약 2천 2백만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, 환경부의 「2006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」에 의하여 2,250만원(국비 1,125만원, 지방비 1,125만원)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없으나,
  - 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재원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됨.
- 안 제4조의 ‘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는 지역을 시지역으로 하되, 천연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충주시와

제천시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시부터 적용하고, 군지역도 자동차의 등록 및 공급여건등을 고려하여 적용'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충주.제천지역의 천연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- 안 제8조에서 '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' 구성을 환경부 준칙안에 15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7개광역시·도(서울,충남,대전,전북,경북,경남 각 15인, 울산 10인)가 준칙안을 준용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나,
  - 본 조례에서 규정한 7인의 위원으로 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등에 관한 조례안